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



코로나 19로 고용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필요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01

1. 지원대상

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주

2. 지원기간

고용유지조치로 임금감소가 발생한 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21.12.31. 까지 최대 6개월 지원)

3. 지원금액

임금감소분의 50%(1인당 월 50만원 한도)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금액을 지원(기업별 총 20억원 한도)

4. 지급주기

1개월 단위로 지급(매월 지급)

5. 승인 받은 근로자 지원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

지원금은 사내복지기금, 협력업체 고용지원, 감소된 인건비 지원 등 전액 근로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



지원요건

02

1.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재고량 증가(50%), 생산량 감소(15%), 매출액 감소(15%) 등 일정요건 충족

2.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합의

20.1.1.~21.11.1. 기간 중 노사가 고용유지를 위한 합의를 한 경우
(단,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법적 절차 준수)

3. 고용유지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은 기간과 그 후 1개월 간 사업장내 근로자(피보험자) 전체의 고용을 유지해야 함
(해당기간 동안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4. 고용유지조치 결과 임금 감소

노사가 합의한 고용유지조치로 인해 임금이 감소된 경우

* 유급(무급)휴업 · 휴직,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임금의 반납 · 삭감 등에 따라 임금이 감소된 경우



참여방법(공모사업)

03

1. 사업계획서 접수

21.11.1. 까지 참여신청서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2.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제출, Fax 등 접수
※ 사업계획서 접수 다음날부터 지원금 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규정 및 고시 참조
※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사업계획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노사상생지원과(근로개선지도과)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